

으로 보인다. “人稅布五匹”이라 함은 人頭稅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一世帶當 布五匹을 課徵하되, “遊人”은 사람 곧 失業者 或은 貧者에 대한 人頭稅는 年을 一納稅期라 하고, 그것도 世帶 共同으로 細布一匹을 租稅로서 納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볼 때, 人頭稅이기는 하지만, 負擔能力을 考慮한 課稅로서 後世의 租稅負擔能力稅의 先驅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또한 地租에서도 “隨其所有, 量貧富, 差等輸之”라 하였으니, 貧富를 가려서 差等課稅하였다는 것을 推測할 수 있는데, 百濟의 史記에서 云는다면, “量歲豐儉, 差等輸之”라 하여 年事의 凶豊에 따라 適正하게 差等を 두도록 한 것이라든가, 新羅의 “復一年租調”云云의 記錄으로 미루어 凶年일 경우에는, 租調 곧 地稅와 戶稅를 免除하였던 것은 오늘날의 負擔公平과 社會正義實現의 減免制度和 같은 것으로서, 우리 祖上들의 슬기로웠던 옛모습은 새삼 자랑스럽기도 하다.

또한, 百濟의 史證에 의하면 “春夏旱, 冬民饑, 發倉賑恤, 又復一年租調”라 하였는데, 旱拔로 인한 凶作에는 年間 地稅와 戶稅를 免除하였을 뿐만 아니라 國庫를 열어 窮民에게 穀類를 施與한 點으로 보아 備荒未制度는 이미古代에 있어서 創設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庸, 곧 身庸은 人頭稅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賦役으로서 一般 人民의 身庸負擔으로 強制되었던 것이 다 혼히, 山城의 築造에 動員된 것이 顯著한 例인 것 같은데 近世에도 景福宮의 重創때에 全國에서 많은 壯丁이 動員된 것을 볼 때, 옛날 稅金으로서의 國家財政上 큰 比重을 차지하였을 것은 물론의 일이다.

古代中國 秦나라의 始皇이 築造한 萬里長城에는 얼마나 많은 人員과 時間이 所要되었을지 그 規模는 想像만 하여도 엄청난 것으로 推測되는데 賦役에 動員된 어떤 壯丁의 아내인 젊은 婦人의 誘惑으로 그 婦人의 男便을 放免하게 하고 平生을 山城築造에 임매였다는 하루밤을 자고 가도 萬里長城을 쌓는다”라는 俗談은 너무도 有名하다.

戶稅인 調는 三國時代 以後 布木으로서 絹·布·糸·麻 등을 納付하였는데, 王家의 被服을 비롯하여 官吏의 制服, 軍士들의 軍服, 製造의 需要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年老하신 분들은 戶稅를 戶布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戶調가 布木으로 納付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戶布에 있어서 생각나는 것은, 李朝末期에 大院君이 攝政으로 登場하면서 부터 民弊를 없애기 위해 書院을 廢鎖하고 出身階級의 區分없이 官吏에로의 登龍門을 開放하는 등 一聯의 革新施政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稅金에 關해서는 戶布證을 改正한 일이 있었다. 改正한 骨子는 從來 兩班階級은 身布의 納付를 免除받아 왔으므로 庶民과 같이 兩班階級도 戶布錢을 納付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時代的 要請에 따라 改革된 戶布法은 戶布不納의 兩班階級의 慣習 때문에 奴僕이나 庶民의 負擔만 오히려 過重하게 되어 常民의 不平이 極甚하였다는 것이다. 史記에도 1897年(高

宗 16年)에 戶布徵收로 兩班 常民間에 紛擾가 일어나므로 各 坊里에 戒示하였다는 記錄이 있는데, 이것은 兩班階級의 戶布不納으로 인한 當時의 社會相을 推하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租稅史에서는 上古의 氏族 國家時代로 부터 近世에 이르기까지 租·庸·調로 一貫되어 왔던 것은 主로 土地經濟를 基礎로 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李朝에 이르러서는 手工業이 더욱 發達되고 商業역시 더욱 進展을 보았으므로, 必然的인 現象에서 서울에 六矣廬 地方에 1,000餘個 所의 非常設市場의 開拓으로 工匠稅와 商人稅가 創設되고 있었으나, 稅收面으로 볼 때에는 微弱하여 稅制의 主軸은 역시 租·庸·調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租庸調의 殘影으로는 오늘날 地方稅의 農地稅가 稅收面에서는 微弱하나 租의 地稅로서 남아있을 뿐이며, 調인 戶稅와 같은 戶別稅가 오랜 歷史를 가졌으나 5, 16 以後에 없어졌으니, 舊時代의 痕跡은 現代社會에서 찾아볼 길이 없다.

이렇듯, 稅金은 먼 上古時代로부터 있었던 것이며, 將來에도 永久히 繼續되는 것은 事實이다. 다만, 時代의 變遷에 따라 租稅制度는 그 時代의 社會經濟에 立脚하여 또 그것을 背景으로 해서 租稅의 形式이나 機能이 달라질 망경 稅金은 이 世上의 眞理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며, 또한 歷史的인 所産이라 하겠다.

第9講 現代社會의 稅金은 어떠한가

稅金은 歷史적으로 變遷하고 繼續되어 왔으며, 그것은 그 時代의 社會經濟를 背景으로 하여 發達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生活을 하고 있는 社會는 資本主義라는 社會이며, 國家의 形態도 立憲民主制이다. 이러한 社會의 租稅는 國家가 必要로 하는 一般의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國民으로부터 徵收한다는 點에 있어서는 옛날과 그리 다름바가 없으나, 近代 國家의 租稅는 法律에 의해서만이 徵收되고 그 負擔은 公平의 原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重要한 特徵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옛날 君主의 私經濟의 性質의 것이었던 時代의 租稅는 君主의 意思에 의하여 徵收되었던 것이므로 거기에는 免稅를 받는 特權階級도 있었으며, 또 同一한 條件이면서도 사람에 따라 輕重의 差가 許多하였다. 그러나, 近代의 租稅는 적어도 一定한 條件을 具備하고 있는 限, 누구이고 課稅上의 特權階級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負擔公平의 原則을 鐵則으로 하고 있는데, 能力에 應分한 負擔이라야 한다는 觀點에서 應能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近代國家에서는 租稅의 名稱, 種類, 徵稅方法, 稅率 등은 모두 國會에서 審議 決定하는 法律에 의하여 制定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基本法인 憲法에도 租稅의 種目이나 稅率은 모두 法律로서 定하도

록 되어 있는데(憲法 第55條), 이와 같은 憲法의 趣旨는 稅金賦課에 있어서 國民의 權利를 守護하고 爲政者의 專橫을 抑制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學問的으로 租稅法律主義라고 말한다.

또한, 오늘날의 租稅는 옛날과 같은 單純한 國家가 必要로하는 經費 充當의 財政收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多樣한 機能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 옛날과 다르다.

오늘날의 租稅는 國家가 富함으로써 그 構成員인 國民이 더 잘 살자는 目的 達成의 機能을 지닌다는 것이다. 國家가 私經濟에서 貨幣를 租稅로서 徵收하여 이것을 다시 一般的 經費로서 私經濟內에 還流시키는 것은 社會經濟的으로 考察할 때 分配論의 機能이고 따라서, 生産論의 機能임을 알 수 있다.

곧 土地, 資本, 勞動, 經營에 대하여 그 所得이나 利潤에 課稅하는 것은 生産에 參與한 個個의 分配에 대한 削減인 것이며, 다시 이 削減에 의하여 獲得한 것을 國家는 經費로서 支出하게 되니 國民經濟內의 어느 個人 또는 階級에 分配로서 價値가 追加되는 셈이다. 물론, 이 分配는 所得의 單純한 移轉에 不過하다고 하겠으나 그 單純한 移轉에 國家를 通하여 그것도 強權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分配 乃至 再分配를 通하여 所得의 削減 또는 追加를 行하는 方法에 適正과 妥當性을 欠하였다면 勞動者에 대하여는 勞動意慾을 沮害하고 企業家에 대하여는 創意에 의한 經營意慾을 잃게하여 社會의 生産力에 惡影響을 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國家의 經費支出은 上述한바의 直接的 分配 뿐만 아니고 社會的 資本으로서도 機能이 있다. 貨幣의 形態로 放出된 經費는 國民經濟內에서 巨大한 量의 勞動과 財貨를 支配함으로써 이에 따라 備値를 創造한다. 이 創造된 價値는 누구의 所得에 歸屬할 것인가? 價値라고 하여도 單純히 財貨 뿐만 아니고 廣範圍한 意味에 있어서 여러가지 施設이나 便益도 包含되어 있다. 例컨데, 通信, 鐵道, 道路등을 使用함으로써 많은 便益을 받고 이로 인한 利潤의 增大를 얻는 것은 國民인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는 租稅收入으로 調達되는 資金에서 많은 事業에 投資 또는 融資를 하여 經濟成長에 寄與하고 있으며,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私經濟와 競合의 位置에 놓이 기도 하나, 오늘날의 稅金은 財政需要만이 아니라 財政政策的 機能을 다함으로써, 經濟循環의 過程에 있어서 實로 重大한 分配的 生産的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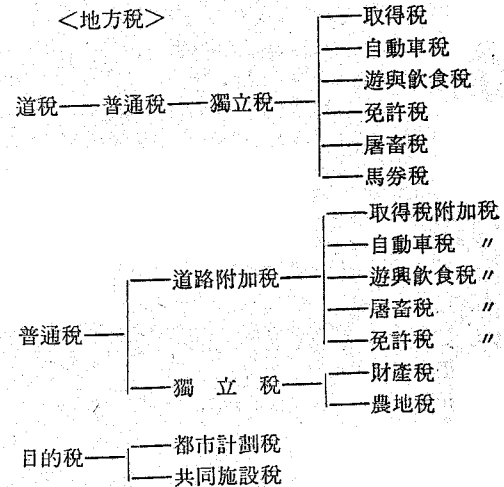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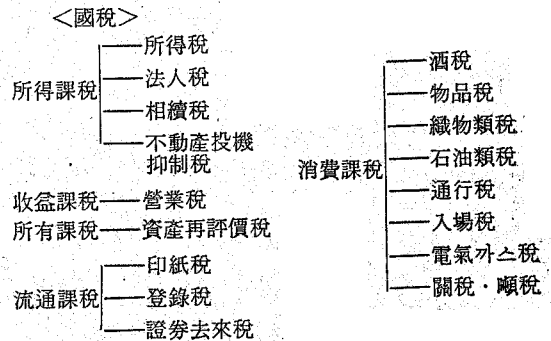
第3講 租稅體系와 우리나라의 現行制度

오늘날의 租稅가 國家의 財政權에 의하여 強制徵收되고 이를 納付하는 것이 國民의 義務무고 할지라도 이것은 理論經濟의 原理에서 주고 받는 하나의 經濟的 現象이므로 稅金은 國家에서 보면 “收入”이고, 私經濟에서 보면 “支出”이며 負擔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經濟는 어느 意味에서 對立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稅金의 賦課徵收 곧 租稅政策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는 租稅理論이나 精神이 充分히 實現되도록 努力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努力의 方向은 어떠한 種類나 內容의 租稅를 配置하여 國民으로부터 徵收할 것인가라는 實際上的 問題로 歸結된다. 그래서, 現代와 같은 複雜한 社會機構에 있어서는 租稅原則을 充分히 配慮할 수 있는 理想的인 實現을 期하기 위하여 各種의 課稅物(稅)을 捕捉하여 各方面에서 課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複雜하고 多岐多數한 稅金을 一定한 理論的 秩序下에서 統一의 體系의 體系로 構成하는 바 이것을 租稅制度라고 한다.

그러므로 租稅制度는 社會事情이나 經濟狀態 및 文化水準 등을 考慮하여 租稅體系를 構成하는데, 다음에서 現在의 우리나라의 租稅體系를 알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現行制度는 所得課稅 特히 所得課稅를 中心으로 하여 收益課稅·流通課稅·消費課稅가 골고루 配置되어 있는데, 이들 國稅와 地方稅의 體系는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所得課稅란 價値所得에 대한 課稅를 말하는데, 價値所得의 主體인 사람을 中心으로 보는 租稅이며, 人稅인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租稅는 所得에 대한 課稅이므로 所得이 있어야만 課稅를 하고 따라서, 元本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長點을 지니는 同時에 所得이 있는 곳에 課稅하기 때문에 負擔의 公平을 實現할 수 있는 租稅이다

收益課稅는 價値收益에 대한 課稅이므로 收益의 媒體인 物件을 中心으로 보는 租稅로서 物稅라고도 하며 收益에 대한 課稅이므로 所得의 有無에는 不拘한다. 따라서, 負擔公平이라는 原則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못되므로 그러한 矛盾의 根을 緩和하기 위하여 稅率을 千分率으로 하는 한편 所得計算上 收益課稅의 稅金을 必要經費로 하고 있다.

所有課稅는 價値의 所有라는 事實에 대한 課稅로서 財産所有의 事實 또는 그 自體에 대하여 課稅하는 稅金인데, 現行 國稅에서는 財産稅는 없고 資産再評價稅는 좀 特異한 租稅이기는 하나, 分類上 所有라는 事實에 대한 課稅이므로 所有課稅라고 하겠다.

流通課稅는 經濟價値의 移轉流通에 대한 課稅인데 交通課稅라고도 한다. 이 流通課稅는 納稅者에게 苦痛을 比較的 덜 주고 또 徵稅費도 輕微하다는 長點이 있으나, 租稅의 負擔關係가 명백치 않으며, 經濟去來의 圓滑化를 沮害한다는 非難도 있다.

消費課稅는 價値의 消費에 대한 租稅이며 個人이 所得으로서 獲得한 것을 支出로서 移轉시키는 경우를 追捉하여 課稅하기 때문에 支出課稅라고도 한다.

消費라는 意味는 單純히 財貨의 消費에 局限하지 않고 施設 등의 서비스 消費도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자동차나 기차를 탈 때에는 通行稅가 後者の 경우이다 消費課稅는 課稅와 徵收를 하는 方法에 따라 直接消費稅와 間接消費稅로 나누어 지기도 한다.

消費者로부터 直接徵收하는 것이 直接 消費稅이며, 消費者에게 直接 課稅되지 않고 다른 사람 例를 들면, 生産者가 일단 納稅하고 財貨의 流通課稅에서 稅額을 價格에 包含하는 措置를 取하고 最終적으로 消費者의 負擔으로 歸着되는 것을 立法上 期待 或은 豫想하는 것이 間接消費稅인데 보통 消費稅라고 하면 이 間接消費稅를 말한다. 消費稅는 窮極의 消費稅가 負擔하므로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에 이르기까지 物品價格에 包含되어 移轉되는 것을 租稅의 轉嫁라고 한다.

例를 들어 酒稅의 경우 稅務署에 대해서 稅金을 納付한 者는 生産者인 釀造場 主人인데, 그 酒稅는 술의 價格에 包含시켜 都賣商에게 賣商은 小賣商에게 각각 流通課稅를 通하여 轉嫁시키고 最終적으로 술을 마시는 消費者가 自己의 消費行爲에서 그 稅額을 負擔하고 만다는 것이므로 消費稅의 擔稅者는 消費者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消費稅를 間接稅라고 하는데, 그 理由는 納稅하는 者와 擔稅者가 다르고 擔稅者는 間接으로 稅金을 내게 된다는 데 있다. 또한, 消費稅는 그 負擔이 直接이 아니고 間接이므로 擔稅者는 負擔에 대한 苦痛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長點이 있으므로 徵稅도 容易하다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反面에 課稅品目이나 稅率을 잘못 策定하면 物價上昇의 要因이 되기도 하고 또 實氣不振으로 不景氣를 招來하기 쉬우므로 政策樹立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慎重을 期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租稅는 公平의 原則을 欠할 수 없는데도 消費稅는 그렇지 못하다는 理論上의 欠點을 內包하고 있다. 所得課稅의 稅金은 社會正義의 實現을 위하여 累進으로 賦課할 수 있으나, 消費稅는 一率의 累進

比例課稅를 할 수 밖에 없어 累進일 수 없고 逆進의 現象을 나타낸다.

逆進이란 所得이 낮으면 낮을 수록 稅金을 많이 負擔한다는 것을 意味하는데 例를 들면 술에 한대 酒稅가 원이라 假定할 때, (所得이 10,000원인 사람이 그것을 마신다면 10,000分の 100을 負擔하게 되나, 所得이 1,000,000원인 사람이 마신다면 1,000,000分の 100으로 逆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消費稅는 어느 것이고 간에 生必品과 같은 大衆의 人 것에 대하여는 可及的 課稅를 避하고 嗜好品이나 奢侈品에 대하여 課稅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그리고 大衆의 人 것에 대해서 課稅하는 것은 逆進의 現象을 모르는 바 아니나, 消費者는 스스로 選擇權이 있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어떻든, 우리와 같은 事情에서는 直接稅 특히 所得課稅를 重點으로 하여 納稅의 苦痛을 敏感케 하기보다는 間接稅 특히 消費稅에 置重하는 것이 稅收面에서나 納稅者의 負擔意識이 鈍感하다는 長點으로 보아 有利한 方向이라 하겠다. 所得課稅가 높으면 企業家는 資本蓄積이 沮害되므로 苦痛意識이 強하고 勤勞者는 生計費에 壓迫을 주거나 貯蓄의 餘地를 縮少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消費稅는 負擔이라는 意識이 거의 없이 消費生活에서 自己의 所得을 削減함으로써 擔稅를 하게 된다. 누구든 술을 마셨다면가 비행기나 자동차를 탔다고는 느낄망정 酒稅나 通行稅를 負擔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直接稅의 重課보다는 消費稅등 間接稅에 置重하는 것이 租稅政策 遂行上 所望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 課稅品目이나 稅率의 制定에 있어서 物價上昇이나 不景氣등 經濟機體 內에서의 經濟的作用이나 影響이 考慮되어야 한다. 가령 어떤 特定物品에 高率의 消費稅를 課稅한다면, 稅收가 增大될 것 같으나, 그 價格이 騰貴하여 出車가 不振하다는가 物價에 刺戟된다는 것과 같은 現象에 대해서 慎重한 檢討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稅金을 分類할 때, 內國稅와 關稅로 區分하기도 하는데, 內國稅란 關稅를 除外한 모든 國稅를 말한다. 關稅는 國境課稅다시 말해서 貨物이 外國으로부터 入國하거나 出國할 때, 課稅하는 것이므로 國內源泉에서 課稅하는 內國稅와 이를 區分하는 것이며, 歲入 豫算上으로도 그러하거나 國稅廳과 關稅廳은 獨立되어 있다.

關稅는 財政關稅와 保護關稅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前者는 稅收 곧 財政을 目的으로 하는 關稅制度이며, 後者는 國內 産業을 保護育成하는 關稅制度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關稅는 後者에 속하여 輸出을 支援하기 위하여 輸出關稅는 全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關稅 다음에 있는 噸稅는 關稅에 속하는 것으로서, 不過 몇個 條項의 獨立性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租稅라기 보다 港灣使用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곧 우리나라의 海港에 入港한 外國의 貿易船舶에 대하여 그 登錄 噸數를 標準으로 課稅하기 때문이며, 稅率도 極히 低廉하고 稅額은 船長이 稅關에 納付한다.